

풀무원건강생활

# 공정거래가이드북 가맹사업부문



##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가맹사업 거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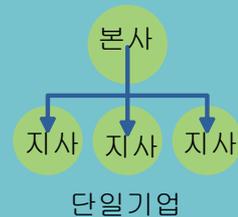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 가맹사업법 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현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가맹사업의 특성

- 가맹사업은 독립사업자들간의 관계와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본사와 지사 사이의 관계의 중간정도의 통제수준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임



##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분쟁해결 노력

###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 유지 및 상품진열
-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누설 금지
-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점 관리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종료

가맹계약 체결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금지



#### Must not do these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상기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금지

#### Must not do these

- ☒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상기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종료

가맹계약 체결



### 가맹사업법 제7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 제공시점

-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일(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 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7일 전까지 제공할 수 있음
- 정보공개서 제공일은 기일계산에 산입되지 않음에 주의

### ▪ 제공방법

- 정보공개서는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종료

가맹계약 체결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 ▪ 제공시점 및 제공방법

- ☞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일전에 서면 제공하여야 함

### ▪ 예상매출액의 산정

- ☞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함
- ☞ 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여 매출액 산정 필요
- ☞ 예상매출액은 법무부서가 각 본부별로 배포한 표준양식을 통해서만 산정하여야 함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 종료



### 가맹사업법 제11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계약서의 제공의무

### 제공시점

-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 체결일(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전에 제공하여야 함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공정한 거래는 바른마음경영의  
실천입니다.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서의 보관

- ☞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 종료



### 가맹사업법 제12조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래거절

###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 부당한 계약해지

-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구속조건부 거래

#### ▪ 가격의 구속

-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가격의 구속이 허용되는 경우

- ☑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의 구속

- ☞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구속이 허용되는 경우

- ☑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 구입강제

-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부당한 강요

-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경영의 간섭

-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판매목표 강제

-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 ☑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 ▪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 ▪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관리

가맹계약 종료



### 가맹사업법 제14조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 가맹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 해지사유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서의 사전 검토를 통해 법정 유예기간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필요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 가맹사업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관리

가맹계약 종료



#### 가맹사업법 제14조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제한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법 위반 Check List

위반유형	점검사항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내용을 설명하면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손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시 서면으로 하고 있는가?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수령일(예치일, 예치합의일)중 빠른날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가?
가맹금 수령	계약금수령일과 가맹계약 체결일중 빠른날의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는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날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 등 영업지원을 중단, 거절하거나 그 지원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가?
	정보공개서 또는 계약서상의 계약종료 사유나 법상의 종료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가 있는가?
	계약기간 중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나 법상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는가?
구속조건부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판매가격과 상이한 판매가격을 본부에 통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는가?
	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요성 없이 설비, 상품, 원재료 등에 대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가?
	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요성 없이 지정된 상품용역만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각종 시설, 상품, 원재료 등의 과도한 구입, 임차를 강제하는 행위가 있는가?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는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는가?
가맹계약의 종료	가맹계약 중도해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가맹계약의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을 2회 이상 발송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가?

가맹본부의 의무·금지사항

공정한 거래는 바른마음경영의 실천입니다.

---

공정거래가이드북 가맹사업부문

발행처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로즈데일빌딩 201)



*Pulmuone*

풀무원건강생활